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06
----------	------

발의연월일 : 2021. 2. 26.

발 의 자 : 강병원 · 민병덕 · 서영석
김두관 · 이성만 · 이수진(비)
윤준병 · 조정훈 · 홍영표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병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여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안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조자등”을 “담배제조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조자등이”를 “담배제조자등이”로 한다.

제9조의3 중 “제조자등은”을 “담배제조자등은”으로 한다.

제9조의4제2항 전단 중 “제조자등은”을 “담배제조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조자등이”를 “담배제조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조자등은”을 “담배제조자등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담배부담금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당음료부담금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자등이”를 “담배제조자등이”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금(이하 “담배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조자등”을 “담배제조자등 및 음료제조자등

(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으로, “담배의”를 “담배 및 음료의”로, “부담금”을 “담배부담금 및 가당음료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음료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판매하는 음료에 다음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희석 또는 혼합하여 음용하는 음료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음용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당류 함량을 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의 기준에 따라 설탕무첨가 및 무가당으로 표시된 음료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당함량 (100 ℓ 당 kg)	부담금 (100 ℓ 당 원)
1 이하	1,000
1 초과 3 이하	2,000
3 초과 5 이하	3,500
5 초과 7 이하	5,500
7 초과 10 이하	8,000
10 초과 13 이하	11,000
13 초과 16 이하	15,000
16 초과 20 이하	20,000
20 초과	28,000

제23조의2제2항 중 “담배의”를 “담배 또는 음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배”를 “담배 또는 음료”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23조제1항의”를 “제23조제1항·제2항의”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23조제3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
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
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
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
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
지 또는 제한) ① (생 략)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
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③ (생 략)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
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
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
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第22條(基金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

한) 담배제조자등은-----

-----.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
지 또는 제한) ① (현행과 같
음)

② 담배제조자등은-----

-----담배제조자
등이-----.

③ (현행과 같음)

④ 담배제조자등은-----

-----.

⑤ (현행과 같음)

第22條(基金의 설치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다음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희석 또는 혼합하여 음용하는 음료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음용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당류 함량을 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의 기준에 따라 설탕무첨가 및 무가당으로 표시된 음료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당함량 (100ℓ 당 kg)	부담금 (100ℓ 당 원)
1 이하	1,000
1 초과 3 이하	2,000
3 초과 5 이하	3,500
5 초과 7 이하	5,500
7 초과 10 이하	8,000
10 초과 13 이하	11,000
13 초과 16 이하	15,000
16 초과 20 이하	20,000
20 초과	28,000

② 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③ 담배제조자등 및 음료제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

자등(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

-----담배 및 음료의-----
-----담배부담금 및 가당음료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⑤ -----제4항에 따라-----

⑥ -----제5항에 따른-----

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 ⑤ (생략)

제23조제1항·제2항의-----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제3항을-----

② ~ ⑤ (현행과 같음)